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김정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3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1월 7일

발 의 자 : 김정태, 유동균, 남창진, 유찬종,
이숙자, 김기대, 이창섭, 이석주,
우미경, 전철수, 김인제, 우창윤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은 기존의 시가지를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개별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,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음.
-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경우, 시에서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등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에서는 구청장만이 입안을 할 수 있고,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 결정 절차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이중으로 거쳐야 하므로,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음.
- 따라서,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하여 사업절차의 간소화

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함(안 제5조제1항15호 및 제5조제2항4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,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5호를 같은 항 제16호로 하고,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존치관리구역에서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심의를 완료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. 이 경우, 주민의 의견을 들은 이후 해당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 중 “제8호까지의 사항”을 “제8호까지 및 제15호 전단의 사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